

# 제1장 클럽

## 총칙

### 제1조 프로클럽의 자격요건

- ① 프로클럽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1) 국내법을 근거로 설립된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2) 특정 행정 단위의 연고지
  - 3) 연고지내에 본 규정 제3장 제2~4조에 부합되는 경기장 보유
  - 4) 사무국
    - 가. 상근임원
    - 나. 사무국장 및 분야별(재무, 안전, 미디어, 마케팅 등) 담당자
  - 5) 연맹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여 등록된 선수를 최소 20명 이상(외국인선수 포함) 보유하여야 한다. 외국인선수는 최대4명(4명일 경우, 1명은 AFC가맹국국적자로 함)으로 한다.
  - 6) 유소년클럽시스템
    - 가. 4단계 연령별 클럽(U10, U12, U15, U18) 보유
    - 나. 상기 가항의 클럽 중 U12, U15, U18클럽은 협회에 등록되어야 한다.
    - 다. 유소년육성책임자(AFC A급 자격증 보유자)
  - 7) 기타 연맹 규정 또는 이사회, 총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
- ② 클래식리그에 참가하는 클럽(이하 '클래식클럽')의 수와 챌린지리그에 참가하는 클럽(이하 '챌린지클럽')의 수는 이사회 결정에 의한다.

### 제2조 가입

- ① K리그에 신규로 참가하는 모든 클럽은 챌린지클럽으로 가입된다. 다만, 군경팀을 운영하는 클럽이 자체 연고클럽을 창단할 경우, 이사회가 참가 리그를 결정한다.
- ② 신규 클럽은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 1) 매년 9월 30일까지 연맹에 가입신청을 한다. 군팀을 운영하는 클럽이 자체 연고클럽을 창단하려는 경우에는 6월30일까지 가입신청을 해야 한다.
  - 2)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가. 회원 가입신청서 - 양식 1. 참조
    - 나. 구단 조직도
    - 다. 예산서

- 라. 연고협약서(지자체 명의) - 양식 2. 참조
  - 마. 재정 지원(보증) 확인서 - 양식 3. 참조
  - 바. 정관 및 구단 내규
  - 사.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 아. 창단 및 1년차 사업계획(창단 이후 5년간 재무계획)
  - 자. 홈 경기장 시설현황 - 양식 4. 참조
- 3) 연맹은 회원가입신청에 따라 다음의 사항에 대해 심사한다.
- 가. 클럽의 경영상태, 중장기 클럽운영계획, 재정확보계획, 사무국 구성계획, 유소년 클럽시스템 운영계획
  - 나. 지역과의 협력관계 및 홈 경기장, 연습구장 등에 관한 현지 조사
  - 다. 클럽 담당자 및 연고지 행정당국 책임자 면담 조사
  - 라. 기타 회원가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 ③ 가입신청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사회 심의를 거쳐 가부를 결정하고, 이후 총회 승인으로 최종 결정된다.
- ④ 이사회 승인을 받은 클럽은 통보일로부터 선수선발 등 이사회가 정하는 일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제3조 클럽의 승격과 강등

- ① 매년 클래식리그 최종 순위의 하위 1클럽이 다음해 챌린지 리그로 강등되고, 챌린지 리그 최종 순위의 상위 1클럽이 클래식리그로 승격한다.
- ② 상기 1항외에 승강 플레이오프를 통해 클럽의 승격과 강등을 정한다.
  - 1) 승강 플레이오프 및 챌린지 플레이오프 경기방식과 대진은 해당 대회요강에 의한다.
  - 2) 승강 플레이오프에서의 승리 클럽은 다음해 클래식 리그로 편입되고, 패배한 클럽은 챌린지 리그로 편입된다.
- ③ 상기 1,2항에도 불구하고 승격대상 클럽 또는 승강플레이오프 대상클럽이 본 규정 제1장 제1조(프로클럽의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차 순위 팀에게 자격을 이양한다.
- ④ 클래식 클럽 수의 확대 등 승격과 강등 클럽의 수를 조정해야 할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사회 결정에 따른다.
- ⑤ 클럽의 파산, 탈퇴, 해체, 징계 등의 변수 발생에 따른 승강팀수 및 승강자격 등은 이사회 결정을 따른다.

### 제4조 가입금 및 연회비

- ① 프로 클럽은 아래의 가입금 및 연회비를 납부한다.
  - 1. 클래식리그
    - 가. 가입금 : 5억원
    - 나. 연회비 : 1억5천만원
  - 2. 챌린지리그
    - 가. 가입금 : 5억원
    - 나. 연회비 : 5천만원
- ② 가입금은 2013년 이후 K리그에 가입한 클럽에게 적용되며, 새로이 가입하는 연도의 정기총회 전일까지 납부한다.
- ③ 연회비는 클럽의 소속리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납부한다.
- ④ 가입금과 연회비 납부가 지연될 경우, 이사회 결정에 따라 회원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납부일부부터 연맹이 운용중인 정기예금 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연금을 일할계산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상별규정 제1장 8조에 따른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변경, 2018/01/15 개정>
- ⑤ 클럽은 가입금과 연회비 외에 총회에서 별도의 납부금을 결정할 경우, 납부하여야 한다.
- ⑥ 클럽이 연맹에서 탈퇴 또는 제명되는 경우에도 클럽이 납부한 가입금, 회비, 기타 각종 납입금 등은 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 제5조 탈퇴

- ① 클럽이 탈퇴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탈퇴 희망일로부터 1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탈퇴사유를 명시하여 연맹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 ② 상기 1항의 절차에 위배하여 탈퇴할 경우, 이사회 결정에 따라 해당 클럽이 보유하고 있는 선수의 양도 등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 ③ 상기 2항에서 제한된 권리는 이사회 결정에 따라 처분한다.

## 제6조 연고지

- ① 연고지는 K리그 최초 회원가입신청에 따라 클럽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이사회, 총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된다.
- ② 연고지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 ③ 상기 2항에도 불구하고 연고지를 변경할 경우, 변경하는 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변경신청을 하고 총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시즌 도중 연고지의 변경은 불가하다.

## 제7조 클럽 및 연고지

① 클럽 명칭과 팀명, 연고지는 다음과 같다.

법인명	팀명	연고지	비고
(주)제주유나이티드에프씨	제주유나이티드	제주도	
(주)아이파크스포츠	부산아이파크	부산광역시	
(주)현대중공업스포츠	울산현대축구단	울산광역시	
(주)GS스포츠	FC서울	서울특별시	
(주)포항스틸러스	포항스틸러스	포항시	
(주)성남시민프로축구단	성남FC	성남시	
(주)전북현대모터스에프씨	전북현대모터스	전라북도	
(주)전남드래곤즈	전남드래곤즈	전라남도	
수원삼성축구단주식회사	수원삼성블루윙즈	수원시	
(주)대전시티즌	대전시티즌	대전광역시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	대구FC	대구광역시	
(주)인천유나이티드	인천유나이티드	인천광역시	
(주)광주시민프로축구단	광주FC	광주광역시	
(주)경남도민프로축구단	경남FC	경상남도	
(주)강원도민프로축구단	강원FC	강원도	
(사)상주시민프로축구단	상주상무	상주시	
(재)수원에프씨	수원FC	수원시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FC안양	안양시	
(주)부천에프씨1995	부천FC	부천시	
(주)이랜드스포츠	서울이랜드FC	서울특별시	
(사)안산시시민프로축구단	안산 그리너스 FC	안산시	
(사)아산스포츠인스퍼레이션	아산 무궁화 FC	아산시	

② 클럽의 법인명칭, 팀명칭 변경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 제8조 부칙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연맹 및 협회, AFC, FIFA의 정관, 규정, 그리고 규정에 준하는 결정사항에 따른다.